

檢 討 報 告 書

전문위원 김 완 섭입니다.

고기판 위원장 외 1인의 동의를 얻어 발의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
□ 제안이유

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자치구조례로 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가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목적을 규정(안 제1조)
- 나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명시(안 제2조)
- 다. 의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됨 (안 제3조 제3호)
- 라.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·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(안 제3조 제4호)
- 마.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

는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됨(안 제3조 제6호)

□ 검토의견

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자치구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의원으로서 품위유지, 직권남용 금지, 직무관련 금품취득금지, 청렴의무, 회의 출석의무 등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 및 규범 그리고, 준수사항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의원의 품위유지는 물론이고 공인으로서 지켜야 할 인격 등의 내용으로 의정활동에 제도적 의무를 부과하는 정신적인 규범이 될 수 있다 고 보아 본 조례안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.

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6. 9. 8

보고자 : 김 완 섭